

【 목 차 】

『철도 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3. 03.

국 토 교 통 부 철도안전정책관

I. 과업 개요	1
II.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III. 과업지시(제안요청)서	4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7
V. 평가방법 및 기준	20
<제안관련 서식>	23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위험물 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한 「철도안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 하위 법령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상의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여 상위 법과의 연계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한 국내 타법과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여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 시 용기 검사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함

2. 과업범위 및 기간

- **시간적 범위**
 - 사례 및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현황 및 통계는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
- **공간적 범위**
 - 국내 철도위험물운송을 위한 위험물 운송 용기의 검사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하되, 사례 조사·분석 및 문헌 검토는 해외자료 포함
- **내용적 범위**
 - 정부, 한국철도공사, 철도 관련 기관·단체의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 가능
 - 본 연구는 아래에 제시한 세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협상 결과 및 연구 수행 중 추가로 논의하여 정한 사항을 포함
-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과업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0일

3. 예산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II.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학술부문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Ⅲ. 과업지시서

1. 과업내용

- ① 「철도안전법」 상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체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체계 운영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위험물 운송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전문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검토
- ② 국제 기준 및 해외사례 조사
 - 철도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련 국제 기준 및 해외사례 조사
- ③ 타 교통수단·분야 조사
 - 항공기·선박 등 타 교통수단에서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관리에 대한 기준 및 관련 법령 조사
 - 타 교통수단·분야에서 국제기준 적용 사례 등 조사
- ④ 국내 주요쟁점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 도출
 - * 철도운영기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등
 - 도출된 주요 쟁점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검토
 - * 법, 언론, 정치, 학계, 시민, 철도, 안전 등
- ⑤ 법령 제·개정사항 제시
 - 「철도안전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등) 개정사항 제시
 - 위험물 포장·적재·관리·운송에 관한 사항,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위험물 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자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철도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준 제정(안) 제시

2. 일반사항

2.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1) 본 과업지시서에서 국토교통부를 “갑”, 용역사를 “을”이라 칭한다.
- 2)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2.2 협의 및 의견수렴 등

- 1)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를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을”은 과업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3) “을”은 과업수행 중 과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학계, 연구원, 철도운영사,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에 반영 한다.
- 4) “을”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기준

- 1) “을”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철도 운송 위험물과 관련된 규정, 관련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2)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범위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예산내역서 중 세부내역에서 명기된 인력이 반드시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인력 중 일부가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갑”은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 4) “갑”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 또는 필요 시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을”은 과업수행 중 연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참여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관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사용언어, 단위 및 용어해석

-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용어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경우 한국어가 우선한다.
- 2) 본 과업수행 상 사용되는 단위는 meter, kg, hour 등 법적 계량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5 계약 금액의 변경 및 조정

- 1) 본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가)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 나) 성과품의 인쇄비, 각종수수료, 환율 등 직접경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경비항목 중 여비, 인쇄비, 회의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호 조정할 수 있음)
 - 다)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과업수행자가 “갑”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3) 본 과업 수행 중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6 용역비용의 관리

- 1)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2) “을”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을 준공 예정일 10일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7 -

- 2) “을”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3) “을”은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을”은 “갑”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0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나)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2.11 특허권의 사용

- 1)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9 -

2.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1)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을”의 잘못으로 인해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2) “갑”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용역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을”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필요할 경우, 과업별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에 입찰할 수 있다.
-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과업수행 관련 책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동수급 참여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이 중 최대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주관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 4) 어느 공동수급체에 포함된 업체는 동 과업에 입찰하는 타 공동수급체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2.9 용역기관의 의무

- 1) “을”은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갑”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8 -

2.12 성과품의 소유

- 1) “을”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을”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발주기관에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3 기타사항

- 1) “을”은 과업진행에 대한 “갑”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총괄 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갑”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며,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고

- 1)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나)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방향
 - 다)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라) 예정공정표
 -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 2) “을”은 월간 과업추진실적(공정)과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10 -

- 3)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또는 타 기관과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 및 처리의견을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성과보고 및 협의

- 1)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을”은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을”은 최종보고서(안)을 인쇄 2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필요한 경우 준공 후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한다. 이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 5) “을”은 착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5.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1)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명확인이 있어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11 -

6. 보안사항

- 1)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을”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거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과업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5)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을”은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으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으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을”이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진다.
- 8)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 13 -

- 3) “을”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4)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5) “을”은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의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6) “을”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중간보고서 5부

나) 최종보고서 5부

다) 최종보고서 요약본(5부) 및 최종보고서를 수록한 usb 1개

- 12 -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9) “을”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자료 결과 등은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10)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2) “을”은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3)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성과물 수량을 초과하여 성과물을 인쇄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초과하여 인쇄할 수 있다.

- 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여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15)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하고, 과업 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16) “을”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17)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4 -

V.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술능력평가(8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일반 현황 (20)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철도 또는 교통 분야 등 연구 역역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력	20	계량
과업 수행 (80)	이 해 도	○ 제안의 목적, 범위 등에 대한 이해도	20	비계량
	사업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적정성 (추진일정, 인력배분 등) ○ 연구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30	비계량
	상호협력	○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T/F 등) 구성, 운영 및 관계기관 의견 적용 방안	20	비계량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지원방안 적정성	10	비계량
계			100	

나.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 참여인력(20점) : 본 과제에 참여할 인력 현황

구 분	1인당 점수배점	비 고
책임연구원	10점 × 참여인력수	해당 기준의 참여인력수를 곱하여 계산 그 합산 값이 배점기준 20점을 초과할 경우 20점으로 배점
선임연구원	8점 × 참여인력수	
연구원	5점 × 참여인력수	
연구보조원	3점 × 참여인력수	

마.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 산정

1)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채점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는 사사오입(반올림) 함

2) 내용평가 득점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함

2. 입찰가격평가(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름

- 필요시 입찰 참가기관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안전과 (044-201-4890)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기타

-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국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 선임연구원 3년 이상	○ 선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3년 이하	○ 연구원	○ 고등학교 이상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연구 계획	이 해 도	20	20	16	12	8	4
	사업수행계획	30	30	24	18	12	6
	상호협력	20	20	16	12	8	4
	사후관리	10	10	8	6	4	2

라. 평가방법

- 점수계산은 소수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로 함
-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공고일로 함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참여인력의 개인별 경력사항

성명	(인) 소속	직책	연령	세
전공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주요경력				
참여실적				
수행연구용역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용역금액	담당업무	발주처

- ※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가 별도 요청 시 각종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부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